관광진홍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11

발의연월일: 2021. 3. 11.

발 의 자:이병훈·김민철·서영교

박 정・이성만・오영환

임오경 · 기동민 · 김영호

정청래 · 김승원 · 홍성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부는 2013년부터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발굴·활용하여 다양 한 관광사업을 실시하고 관광객이 이를 소비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.

그런데 2019년 기준 480여 개의 주민공동체가 구성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조직이 분명하지 않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.

이에 현행법에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의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주민사업체의 조직 및

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12 및 제48조의13 신설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48조의12 및 제48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8조의12(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지역자원의 연계·활용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- 1. 지역관광 관련 전문인력 발굴 육성
- 2. 교육·홍보 및 정보 제공
- 3.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
- 4.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
- 5.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
- 6. 제48조의13에 따른 주민사업체의 운영 및 사업 수행 지원
- 7.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 체, 관광사업자 및 제48조의13에 따른 주민사업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,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전 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48조의13(주민사업체의 등록 및 지원 등) ① 지역 주민은 지역자원의 연계·활용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(이하 "주민사업체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 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사업체의 사업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사업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
 - 2.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

- 3. 주민사업체의 목적, 구성 또는 운영 형태가 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- 4. 그 밖에 주민사업체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⑤ 그 밖에 주민사업체의 등록, 등록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8조의12(주민 중심의 지역관 광 활성화)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지역자원의 연계·활용을 바탕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 1. 지역관광 관련 전문인력 발굴·육성 2. 교육·홍보 및 정보 제공 3.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유휴공간 활용 지원 4.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5.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6. 제48조의13에 따른 주민사업체의 운영 및 사업 수행 지원원 기의 운영 및 사업 수행 지원 및 가수 기업관광 기업관광 기업관 기원 기원 기업의 기업관 기업관 기원 기업의 기업관 기업
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 지방자치단체, 관광사업자 및 제48조의13에 따른 주민사 업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, 평가 결 과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 정할 수 있다.
-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u>제48조의13(주민사업체의 등록</u> 및 지원 등) ① 지역 주민은

<신 설>

지역자원의 연계·활용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자 율적으로 단체(이하 "주민사업 체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사업체 의 사업 실시 및 운영에 필요 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사업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 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 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
- 2.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

- 사업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
- 3. 주민사업체의 목적, 구성 또

 는 운영 형태가 사업 수행에

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- 4. 그 밖에 주민사업체를 운영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- ⑤ 그 밖에 주민사업체의 등록, 등록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